

예산총칙

2022년도 추경 3 회

제 1 조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1,170,500,000	35,115,000
일반회계	1,082,334,000	32,470,020
특별회계	88,166,000	2,644,980
공기업특별회계	66,980,000	2,009,400
수도사업특별회계	41,080,000	1,232,400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5,900,000	777,000
기타특별회계	21,186,000	635,580
수질개선특별회계	5,352,000	160,56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3,080,000	92,400
저소득주민주거안정기금특별회계	208,000	6,240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443,000	13,290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251,000	7,530
치수사업특별회계	1,071,000	32,130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481,000	14,430
주차장특별회계	10,300,000	309,000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83,311,508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특별회계 포함) 지방채차입 한도액은 20,200,000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의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